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권을 상장하지 않은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청약자의 중복청약(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약한 이후에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 따른 청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나.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행위(최초로 청약을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8조제5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④ (생략)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생략) <u><신 설></u>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주권을 상장하지 않은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 <u>가.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청약자의 중복청약(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약한 이후에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 따른 청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u>

5. ~ 14. (생략)	<u>나.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행위(최초로 청약을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u> 5. ~ 1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2